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15

발의연월일: 2024. 6. 27.

발 의 자:문금주・박지원・신영대

주철현 · 김영배 · 박 정

김주영 · 복기왕 · 권칠승

강준현 · 정을호 · 서삼석

위성곤 • 이광희 의원

(14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뭄, 홍수, 호우, 이상저온, 대설, 한파, 폭염 등을 농업재해의 범위로 규정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예방과 사후 대책을 통해 농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고온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꿀벌활동시기가 이들이 의존하는 식물의 생태주기와 맞지 않아 먹이가 줄어들고 꿀벌들이 농작물 꽃가루받이를 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부족해지며 작물 개화 시기를 놓치는 상황이 발생함.

또한 다양한 환경의 변화로 한반도 곳곳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피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함으로써 농업인을

보호할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법률 제 호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異常低溫)"을 "지진,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異常低溫), 이상고온(異常高溫)"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농업재해"란 가뭄, 홍수, 호	2		
우(豪雨), <u>해일, 태풍, 강풍,</u>			
이상저온(異常低溫), 우박, 서	<u>지진, 해일, 태풍, 강풍,</u>		
리, 조수(潮水), 대설(大雪),	이상저온(異常低溫), 이상고		
한파(寒波), 폭염(暴炎), 황사	온(異常高溫)		
(黃砂),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病害蟲), 일조량(日照			
量) 부족, 유해야생동물(「야			
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유해야			
생동물을 말한다), 그 밖에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			
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			
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			
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한다.			
3. ~ 13. (생 략)	3. ~ 13. (현행과 같음)		